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및 제출일자 : 포항시장(2025. 01.23.)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01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21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-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(2025. 02. 12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건축디자인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,

❍ 건축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8조제1항)

❍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제4항)

❍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 지정 시 공개모집에 따라 지정하거나 포항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(안 제12조의2제2호)

❍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개선(안 제42조제3항)

❍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른 자구 수정

3. 제안근거

❍ 「건축법」

❍ 「건축법 시행령」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종율)

❍ 본 조례안은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, 건축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❍ 주요 내용으로

- **안 제8조에서** 전문위원회 중 계획·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규정을 정비
- **안 제11조에서**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규정
- **안 제12조의2에서** 시·도지사가 작성한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호 규정을 삭제
- **안 제42조에서**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

❍ 종합검토 결과,

전문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운용을 도모하고,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인 건축법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❍ 다만, 기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산정 시점에 대한 민원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　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　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❍ 기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산정 시점에 대한 민원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

2. 수정사항

❍ **포항시 건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2021년 11월 2일 이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<신 설>	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신 설>	제2조(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2021년 11월 2일 이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